"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"

한 국 건 설 자 원 협 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참 조 사무국장
제 목 「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 알림

koras_story 한국건설자원협회

1. 최근 김태선 의원이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 등을 성토·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 시 준수사항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「폐기물물관리법」일부개정(안)을 대표 발의('26.11.13, 붙임 참조)하였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주요 내용과 의견제출 양식을 참고하여 오는 11월20일(금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: 02-3476-8464, 이메일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(안) 주요내용

□ **재활용골재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(이하 "재활용골재등")을 복토·성토용으로 사용 시 준수사항 마련(안 제13조의2제3항 관련)**

○ 아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

① 제품 승인 및 공급계획 제출·승인, ② 유해물질 함유량·토양오염도, ③ 폐기물 인계·인수 및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, ④ 성·복토 보고

□ **농지·산지 등에 폐기물(재활용골재등 포함)의 사용 제한(안 제13조의7 관련)**

○ (제한 지역) 농지, 산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 우려가 큰 저지대·연약지반 등

○ (제한 용도) 복토재·성토재·채움재 또는 배수층 설치용

○ (제한 대상) 재활용골재등,「건설폐기물법」에 따른 건설폐기물 및 이를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·제품

○ (예외 대상) 관계 법률에 따라 전용 절차를 거친 공사, 인·허가 건설공사(대통령령 기준 적합), 농지개량·산지복구·재해복구 공사 등

□ **재활용골재등에 대한 올바로시스템 및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의무 부여(안 제18조제3항 관련)**

□ **사용 대상 부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 의무 부여(안 제38조의2 관련)**

○ 구체적 내용·시기·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

① 종류·양, 유해물질 함유량, 검사·분석 결과, 사용기간, ② 시작·완료, ③ 전후 주변환경 영향 조사·분석

□ **벌칙 및 과태료(안 제63조, 제68조 관련)**

○ 준수사항 또는 사용 제한 위반: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

○ 미보고·거짓 보고: 300만원 이하 과태료

□ **시행일: 공포 후 6개월**

나. 의견제출 양식

업체명 (담당자)	**개정안에 대한 의견** (찬성/반대/수정)	**사유** (반대사유 또는 수정건의사항)

붙임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「폐기물관리법」 일부개정(안) 1부(협회 홈페이지 참조)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11/17

대리 **정윤희** 팀장 **권병문** 본부장 **강한서** 사무총장 **문정호** 회장 **김동구**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615 (2026.11.17) 접수

우 05636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18 (방이동,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) / http://www.koras.org

전화 02-2046-5923 전송 02-3476-8464 / yoony0815@koras.org / 공개